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 1090

2016. 04. 2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○ 2016. 4. 7. 서울특별시장 제출 (2016. 4. 12. 회부)

2. 제안이유

○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법규 상호간 중복된 내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부분 삭제(현행 제4조제 2호 및 제4호, 현행 제15조, 현행 제16조제2항)
- 나. 도시재생정책에 인적자원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조사 시 주민의 성별·연령·계층·지역적 특성을 반영토록 함(안 제 14조제4항)
- 다.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범위를 「지방재정법」과 체계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(안 제20조제2항), 지원받은 예산의 정산 의무 등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르도록 함(안 제20조제3항)

- 라. 도시재생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원범위, 방법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법으로서의 보조, 융자 관련규정을 정비함(안 제22조)
- 마. 도시재생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 거나 변경하기 전에도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)
- 바.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금액 환수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함(안 제24조)
- 사. 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규제 중 주차장 설 치기준을 완화적용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해당사항 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해당사항 없음

(3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 : 해당사항 없음

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해당사항 없음

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개선의견 있음(성별영향평 가 검토의견 통보서 및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별첨)

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(2) 입법예고(2016.2.4.~2.26)결과 : 별첨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별첨

5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법규와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 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려는 것으로 2016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4월 12일 우리위원 회에 회부된 사안임.

□ 법령 중복 규정 정비

- 안 제4조(제2호 및 제4호), 안 제15조, 안 제16조제2항은 상위법령(도 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(이하, 법) 및 시행령(이하, 시행령))과 중복 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임.
-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, 제15조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·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을 강조하는 입법 취지가 추정되므로, 법령 중복 사항의일괄 삭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.
- 특히, 상위법령의 중복 사항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조문번호와 조항번호가 변경되는데, 법규의 조문·조항은 관련제도나 계획, 방침 등에서 자주 인용되기 때문에 조문번호 및 조항번호 변경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□ 규정의 보완·개선

- 안 제14조는 주민 의견을 조사할 때 주민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되도 록 내용을 보완하였고.
- 안 제18조제1항은 법령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·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.
- 안 제18조제2항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· 정산내역 등의 제출기한 을 매년 말일에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.
- 안 제20조는 주민협의체의 예산 지원 범위와 정산의무 등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.
 - 안 제20조제2항은 종전 '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'라고 하면 사업비 외에 주민협의체의 운영비도 예산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, 주민협의체 운영비는 법적으로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, 주민협의체의 추진 사업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고,
 - 안 제20조제3항은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도시재생지 원센터 보고를 없애는 대신,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서울시의 점검 등을 강화한 것으로,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재 막 시작단계로서 지역별 로 그 현황이 다르고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하여, 보고 대 상을 서울시로 일원화하고 서울시의 점검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이해 됨.

〈제20조제3항 개정 전후 비교〉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규 정	제21조(주민협의체) ③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 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 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 여야 한다.	제20조(주민협의체) ③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 여는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서울특 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.
권 리 (시장)	-	·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
의 무 (주민협의체)	・실적보고 및 정산 -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 - 주민협의체 → 시·도시재생지원센터	・실적보고 및 정산 -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 - 주민협의체 → 시장
제 재	-	·시정명령 ·사업의 일시정지 ·벌칙

^{*} 도시재생본부(재생정책과) 자료

□ 지원 규정의 체계화 및 실효성 제고

○ 제23조(보조 또는 융자), 제24조(도시재생사업 지원), 제25조(지원 금액의 환수)로 운영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항을, 안 제22조 (재정지원)와 안 제24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액의 환수)로 이 원화하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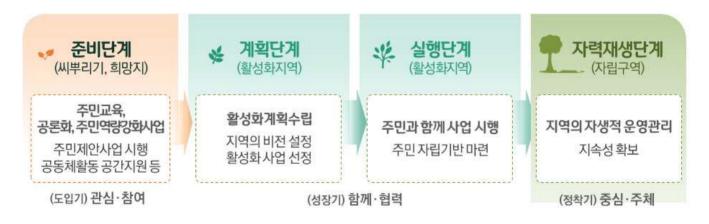
지원계획은 공고하도록 하며(안 제22조제1항),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(안 제24조제2항)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규정을 보다 체계화한 것으로 이해됨.

다만, 보조 또는 융자 조건, 이율 등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(안 제22조제2항), 이 조례 제정('15.1.2) 후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, 조속한 시행규칙 마련이

필요하다고 하겠음.

- 안 제23조(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)는 서울시가 도시재생활 성화지역 지정 전에 약 1년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도입하여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시행하기로 함에¹) 따라, 이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 기 위하여 신설한 것으로 이해됨.
- 이는 또한 지난해 12월 공고된 도시재생법정계획인 "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"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적용되던 3단계 프로세 스에 준비단계를 새롭게 도입하였는 바, 법정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 기 위한 입법 조치에 해당함(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, 89-90p).

〈주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〉



- * 도시재생본부 보도자료('16.1.22)
- 안 제26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는 시설물 인근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 경우,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(이하, 주

^{1) &#}x27;근린재생일반형'의 경우, 주민 공모로 희망지 20곳을 선정하고, 선정된 희망지 1개소 당최대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,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의제 발굴·시행, 주민공모를 통한 소규모 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(총예산 24억8천만원).

^{&#}x27;경제기반형'이나 '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'은 자치구의 제안을 받아 후보군을 선정하고 해당 후보군에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수 아이디어 10개를 선정하여 도시재생사업 등을 실행할 계획임(총예산 3억원).

차장 조례)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현행 주차장 조례에는 '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(별표 2)'은 있으나 완화범위 등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, 주차장 조례와 별도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임.

주차장 설치기준은 도시재생 현장에서 규제 체감도가 높은 편으로 도시재생의 추진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, 시행령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(붙임), 주차장 조례의 입법 미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없는 상황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.

다만, 주차장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무용화할 수 있 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주차장 조례에 도시재생활 성화지역의 주차장 완화범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이 필요 하다고 사료되며,

차선책으로 이 조례에서 해당 사안을 규정한다면,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가 주차환경·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용주차장 확대 와 연계하는 등 그 완화조건이나 완화범위가 규칙이나 지침에서 제시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 〈붙 임〉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관련 법령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32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-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
-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 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「주택법」 및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「건축법」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 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제39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)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.

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.

주차장법 시행령

제7조(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)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"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.

- 1. 「도로교통법」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
- 2.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 을 설치하는 경우
- 3.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 (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)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
- 4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인 경우
-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(이하 "시·군 또는 구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
 - 1.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
 - 2.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·리(행정동·리를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 및 그 시설 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·리